

(우)04373 서울시 용산구 청파로 40 삼구빌딩 7층 8층 [http://www.kma.org] / 전화(02)6350-6541/ 전송(02)796-4487
정책국 국장 최윤배[6530] 법제팀장 이성민[6553] 팀원 윤영섭[6541]/ E-mail : kmasup@daum.net

문서번호 대의협 제 715 - 12539 호

시행일자 2018. 2. 28.

수 신 수신처 참조

참 조

제 목 연명의료결정법 주요내용 정리 및 Q&A 자료 배포의 건

1. 의료계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시행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약칭, 연명의료결정법)과 관련하여 해당법과 제도에 대한 산하단체 및 회원들의 문의사항이 많은 상황인바, 우리협회는 산하단체 및 회원들의 궁금증을 해소코자, 붙임과 같이 ‘연명의료결정법 주요내용 정리 및 Q&A 자료’ 를 제작하였습니다.

3. 이에 우리협회에서 마련한 ‘연명의료결정법 주요내용 정리 및 Q&A 자료’ 를 귀 회로 안내드리고자 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참고로 2018. 2. 21.자로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였습니다. 개정안은 '환자 또는 환자 가족의 의사에 반해 연명의료를 중단할 경우'만 의료진을 처벌하기로 하여 그 의미를 명확히 하였으며, 이를 위반했을 때의 의료진에 대한 처벌 수위도 기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징역 1년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또한 말기환자 정의 규정에서 ▲암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 ▲만성 간경화 등 질환 제한을 삭제하고, 대신 호스피스대상환자란 개념을 신설, 해당 호스피스대상환자 중 말기환자 범위를 ▲암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 ▲만성 간경화 등 네 가지 질환 외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질환까지 확대하여 호스피스대상이 되는 말기환자의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연명의료의 정의 중 해당되는 시술을 기존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등 네 가지 시술에서 대통령령으로 시술까지 추가하여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는 조건이나 범위를 유연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호스피스 시설을 이용하는 말기 환자는 담당 의사 1인만 '임종기 환자'라고 판단해도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참고로 현행법에선 전문의

1인과 담당 의사 1인의 판단이 필요했습니다. 이와 같은 개정안은 현재 우리협회가 제작한 매뉴얼에는 반영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최종 개정, 공포시에 이부분을 반영한 수정 매뉴얼을 추가로 배포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연명의료결정법 주요내용 정리 및 Q&A 자료집 1부. 끝.

대한 의 사 협 회 장

“국민의 건강과 행복, 의협이 함께 합니다”



수신처 : 각시도의사회장, 대한의학회장 및 각전문학회장, 대한개원의협의회장 및 각과개원의협의회장, 대한전공의협의회장, 대한공중보건의협의회장, 대한병원의사협의회장